

『고단위플러스』 요약 상품설명서

[기본정보]

(2025.09.01 현재, 세전)

구 분	내 용		
상 품 특 징	다양한 금리적용방식, 이자지급방식, 이자지급시기 및 예금기간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정기예금		
상 품 유 형	정기예금	가 입 대 상	제한없음
가 입 금 액	- 금리확정형 : 1백만원 이상 - 금리연동형 : 1천만원 이상 -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에서는 상품종류 관계없이 1만원 이상 가입 가능		
계 약 기 간	가입유형	계약기간	
	금리확정형	1개월 이상 ~ 5년 이내 일단위	
	가입유형	계약기간	선택가능 연동주기
	금리연동형	1년	1개월, 3개월, 6개월 연동형
		2년	3개월, 6개월 연동형
		3년	3개월, 6개월 연동형
		5년	3개월, 6개월, 1년 연동형(※법인온 1년 연동형 가입불가)
기 본 금 리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적용		
세 제 예 택	○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예금담보대출	○	납입액의 100%까지 가능	
예금자보호여부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유의사항]

※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 (1599-1111,0,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계산방법	가입금액에 예치기간에 따라 약정금리로 계산하여 지급	
중도해지금리	기간	중도해지금리
	1개월 미만	연 0.10%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연 0.15%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연 0.20%
	6개월 이상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율 ^(주1) x 경과율 ^(주2) (단, 연 0.20% 미만 시 연 0.20% 적용) (단위: 연, %)
	(주1) 차등율: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경과 시: 60%적용, 9개월 이상~11개월 미만 경과 시: 70%적용, 11개월이상 경과 시: 90% 적용 (주2) 경과율: 경과일수 / 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로 산출 시 1.564%로 적용	
만기 후 금리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4	

※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용시 불필요한계좌를 정리할 수 있으며, 휴면계좌 통합조회서비스이용시 휴면계좌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단위플러스』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는 경우(예시:유선가입시는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등),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고단위플러스』
- 상품특징 : 다양한 금리적용방식, 이자지급방식, 이자지급시기 및 예금기간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정기예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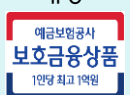
2 거래 조건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증서)이나 계약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약상세조회에 따릅니다.

(2025.09.01 현재, 세전)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정기예금
신규 및 해지 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가입금액	● 금리확정형 : 1백만원 이상 ● 금리연동형 : 1천만원 이상 ● 인터넷/스마트폰뱅킹에서는 상품 종류 관계없이 1만원 이상 가입 가능
계약기간	가입유형	계약기간	
	금리확정형	1개월 이상 ~ 5년 이내 (일단위 만기 지정)	
	가입유형	계약기간	선택가능 연동주기
	금리연동형	1년	1개월, 3개월, 6개월 연동형
		2년	3개월, 6개월 연동형
		3년	3개월, 6개월 연동형
		5년	3개월, 6개월, 1년 연동형 (※법인은 1년 연동형 가입불가)
이자지급방식	● 금리확정형 - 만기일시지급식: 만기해지 시 원금과 함께 지급 - 이자지급식: 고객의 지정에 따라 월별, 3개월별 또는 매 1년마다 지급 - 수시이자지급식: 경과 기간에 대하여 고객이 지정한 날까지 이자를 지급 - 연원가식: 매 1년마다 계산된 이자를 원천징수 후 원금에 가산 ● 금리연동형 - 만기일시지급식: 지정한 금리연동주기*마다 복리로 계산하여 만기해지 시 원금과 함께 지급 - 이자지급식: 지정한 금리연동주기*별로 해당일에 원천징수 후 이자 지급 - 연원가식: 매 1년마다 계산된 이자를 원천징수 후 원금에 가산 * 금리연동주기: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기본금리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적용		
금리우대쿠폰	금리우대 쿠폰의 우대금리는 하나원큐 내 쿠폰함 또는 상품가입 시 제공되는 쿠폰의 우대금리를 따르며, 만기해지 시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 ※ 단, 신규 가입시에만 쿠폰 사용이 가능하며, 재예치 또는 중도해지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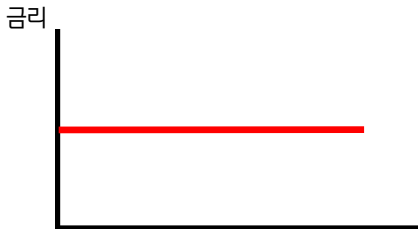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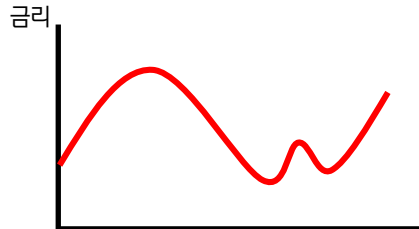
중도해지금리 (금리확정형)	▶가입금액에 대하여 신규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금리로 계산 (원미만 절사)	
	기간	중도해지금리
	1개월 미만	연 0.10%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연 0.15%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연 0.20%
	6개월 이상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율 ^(주1) x 경과율 ^(주2) (단, 연 0.20% 미만 시 연 0.20% 적용) (단위: 연, %)
	^(주1) 차등율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율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 시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 시
	60% 적용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 시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 수 / 계약일 수 (단, 경과일 수는 계약일 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로 산출 시 1.564%로 적용		
중도해지금리 (금리연동형)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www.kebhana.com) 고시금리 참고	
만기 후 금리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4	
이자계산방법	가입금액에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약정금리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일부해지	만기일시지급식에 한하여 만기해지 포함 총 3회까지 가능 (법적제한이 있는 경우 일부해지 불가) ※ 이자지급식, 수시이자지급식, 연원가식은 일부해지 불가합니다. ※ 일부해지 후 잔액이 최저 가입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	
갱 신	가능 (금리확정형에 한함)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세제혜택 (개인, 개인사업자)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양도 및 담보제공	-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 및 질권설정이 가능 -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가능	
계약해지방법	- 영업점, 비대면채널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및 자동 만기해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지 ※ 비대면 채널에서의 해지는 일부 제한사항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 가능(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하며, 실제 해지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	
통장발행	통장 미발행 가능	

연계· 제휴서비스	해당사항없음	
휴면예금 및 출연	-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 (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99-1111,0,1), 고객의 소리(080-933-11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여부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3

유의사항

- 금리연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운용형태		
특징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일정주기(3/6개월 등)마다 예금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금리가 변동
장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단점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기타	긴급 자금 수요 등으로 중도해지할 경우 금리확정형 정기예금보다 금리연동형 정기예금이 유리할 수 있음	

이 예금은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 상품문의는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99-111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	설 명
압류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과기간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